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96

발의연월일: 2020. 8. 20.

발 의 자:윤준병·김홍걸·박영순

강준현 • 인재근 • 김성주

진성준 • 이소영 • 민형배

장경태 · 민병덕 · 이용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월차임(月借賃)의 수준이 주택가 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임.

실제,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연 4%로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고, 특히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월세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큰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 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2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제)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	
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	
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	
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	
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	
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	
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u>100</u>	<u>100</u>
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	분의 20
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	
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	
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	

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	0
<u>0분의 12</u>]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1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u>-</u>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u>-</u>
것으로 한다.	

②・③ (생 략)

<u>10</u>
0분의 24
②·③ (현행과 같음)